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여러 국가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입을 얻는다. 국가는 기업 활동에 과세하려고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기업의 본사 소재지나 사업장이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과세권을 정해 왔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은 서버·본사·무형 자산의 권리 등을 서로 다른 국가에 배치하여, 서비스 제공 국가에서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그 국가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이윤을 조정할 유인을 가진다.

예컨대 플랫폼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무형 자산의 권리를 보유하게 하고, 다른 국가의 법인이 그 권리를 사용해 수입을 얻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수입이 발생한 국가의 법인이 권리 보유 국가의 법인에 로열티를 지급하게 하면, 로열티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입이 발생한 국가에서 신고되는 이윤(과세표준)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수입이 발생한 곳에서 반드시 이윤도 남는다”는 직관은 그대로 ㉠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일부 국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검토한다. 여기서 디지털세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로 거둔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디지털세는 이윤이 아니라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삼으므로, 로열티 지급 등으로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과세가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한다’와 같은 면제 기준을 둘 수 있는데, 이때 일부 기업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서비스 구조를 조정할 유인을 가질 수 있다.

한편 플랫폼 기업의 수입은 이용자의 활동 및 데이터와도 관련된다. 이용자의 행동 기록은 그 이용자의 데이터이며, 그 이용자가 정보 주체이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기업으로 옮길 수 있는 데이터 이동권이 논의되기도 한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요청하면 보유자가 그 데이터를 본인 또는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다만 정보 주체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보유자가 분석·가공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결과물은 데이터 이동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데이터 이동권이 도입되면 기업이 다른 기업이 보유하던 데이터를 전송받아 활용함으로써 생성 비용이나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A). 그러나 이용자들이 보안 신뢰가 높거나 혜택이 큰 일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키면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기존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신규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B). 이처럼 정책은 산업 활성화와 시장 집중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함께 낳을 수 있어, 데이터 집중을 ㉡ 완화하기 위한 추가 장치가 논의되기도 한다. 한편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정보 주체는 데이터 이전에 수반되는 절차적·시간적 비용을 ㉢ 부담한다고 볼 수도 있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로열티 지급은 수입이 발생한 국가에서 신고되는 이윤을 줄이는 데 이용될 수 있다.
- ② 디지털세는 해당 국가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로 거둔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
- ③ 디지털세는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삼으므로, 로열티 지급 등으로 이윤이 감소하더라도 과세가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을 수 있다.
- ④ 디지털세가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이상, 로열티 지급으로 이윤이 줄어들면 해당 국가에서의 서비스 수입도 그만큼 감소하므로 디지털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 ⑤ 데이터 이동권은 정보 주체가 요청하면 보유자가 데이터를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지만, 분석·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결과물은 그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5. 윗글의 [A], [B]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 이동권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이용자 이동이 특정 기업으로 쏠리면 시장 집중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집중될 때 기존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
- ④ 비용 절감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집중이 나타날 경우 경쟁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가 함께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이동권이 도입되면 이용자 이동이 일부 기업으로 집중되더라도 기업 간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커지므로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고 본다.

국어 영역

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플랫폼 기업 X는 A국(법인세율이 낮음)과 B국(법인세율이 높음)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X는 알고리즘 사용 권한을 A국 자회사에 두고, B국 자회사가 A국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B국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서 'B국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로 거둔 연간 수입이 100 이상인 경우'에 한해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기업 X의 B국에서의 연간 서비스 수입은 120이며, B국 자회사가 A국 자회사에 지급한 로열티는 30이다.

또한 B국의 이용자 갑은 X의 서비스에 '구매 내역'과 '검색 기록'을 남겼고, X는 이를 분석·가공하여 갑에게 '맞춤형 소비 성향 지표'를 제공하였다. 이후 갑은 데이터 이동권을 근거로 X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제3자인 Y기업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① B국의 디지털세는 B국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로 거둔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② B국 자회사가 로열티를 지급하면, B국에서 신고되는 이윤이 줄어들 수 있다.
- ③ '구매 내역'과 '검색 기록'은 정보 주체인 갑의 데이터에 해당하므로, 데이터 이동권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④ '맞춤형 소비 성향 지표'는 분석·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결과물일 수 있으므로, 데이터 이동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⑤ 로열티 지급으로 B국에서의 이윤이 줄어들었으므로, B국에서의 연간 수입이 100 미만으로 보아 X는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7.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능하지
- ② 정당하지
- ③ 타당하지
- ④ 실현되지
- ⑤ 유효하지

국어 영역

정답 및 해설

정답표

| |
|---------------------------|
| 4번: ④ / 내용 일치 여부 판단 / 중 |
| 5번: ⑤ / [A]·[B] 독자 반응 / 중 |
| 6번: ⑤ / 보기 적용 / 상 |
| 7번: ③ / 어휘 문맥 바꿔 쓰기 / 중 |

문항별 상세 해설

- 4. [내용 일치] 정답 ④
 - 해설: 디지털세는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세금이다. 로열티 지급은 비용 처리로 이윤(과세표준)을 줄일 뿐, 해당 국가에서 거둔 서비스 수입 자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로열티 지급으로 이윤이 줄면 디지털세 부담도 줄어든다"는 ④는 이윤 기반 과세와 수입 기반 과세를 혼동한 진술로,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은 2문단, ②·③은 3문단, ⑤는 4문단의 내용과 일치한다.
- 5. [독자 반응] 정답 ⑤
 - 해설: [B]는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집중될 경우 기존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한다. 그런데 ⑤는 "이용자 이동이 집중되더라도 진입 장벽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고 하여 [B]의 우려와 정반대로 결론 내리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은 [A], ②·③은 [B], ④는 [A]와 [B]를 함께 수용하는 반응으로 모두 적절하다.
- 6. [보기 적용] 정답 ⑤
 - 해설: 디지털세의 과세 기준은 B국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로 거둔 연간 수입이다. 기업 X의 B국 연간 서비스 수입은 120으로 이미 면제 기준(100)을 넘어 과세 대상이다. 로열티 30은 이윤을 감소시키는 비용 항목일 뿐 수입 자체를 줄이지 않으므로, ⑤처럼 "수입이 100 미만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문단에서 디지털세가 이윤이 아니라 수입을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 부분과도 어긋난다.
 - ① 디지털세의 정의(3문단)와 일치한다. ② 로열티는 비용으로 처리되어 B국에서 신고되는 이윤을 줄일 수 있다(2문단). ③ '구매 내역'·'검색 기록'은 정보 주체 갑의 데이터에 해당한다(4문단). ④ '맞춤형 소비 성향 지표'는 분석·가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므로 데이터 이동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4문단).
- 7. [어휘 - 문맥상 바꿔 쓰기] 정답 ③
 - 해설: ㉠ '성립하지'는 "수입이 발생한 곳에서 반드시 이윤도 남는다"는 직관(명제)이 이치에 맞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쓰였다. 명제나 주장이 논리·사리에 들어맞는다는 뜻의 '타당하지'가 문맥상 가장 자연스럽게 대응된다.
 - ① '가능하지'는 실현 가능성의 문제로 초점이 달라진다. ② '정당하지'는 옳고 그름의 윤리적 판단을 함의한다. ④ '실현되지'는 직관(명제)이 아닌 사태·결과에 어울린다. ⑤ '유효하지'는 규정·계약 등의 효력 유지에 주로 쓰여, 직관의 논리적 성립 여부를 말하는 본 맥락과는 거리가 있다.

